

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- 편집자 주 -

■ ■ ■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

-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(45등급)를 운용하여 왔으나, '08년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,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
- 기준소득월액의 상·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,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,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,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.
- 기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,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.
- 기이에 따라,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·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■ ■ 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

- '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(credit) 제도*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입니다.
-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할 경우 12개월,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(최고 한도 50개월)하는 인센

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,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-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(현역 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)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.

<크레딧(credit)제도 개요>

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, 선진국은 육아, 가족수발, 군복무, 실업, 질병·장애, 교육·직업훈련 등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.

■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

- 종전, 『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』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,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.
- 이에 따라, '08년 1월부터 『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(120만원)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』 규정을 신설하여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
■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

-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%에서 '08.1월부터 50%로 인하됩니다.
- 따라서 '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,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됩니다.
- ※ 급여율은 '08년에 50%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.5%p씩 낮추어 2028년에 도달 시 40%로 인하됨

「신·구 대비표」					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	기준소득월액 제도 도입	○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소득세율액 등급 체계를 운용 - 1등급(22만원) ~ 45등급(360만원)	○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 하고,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- 천원 단위로 부과하며,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상·하한선은 종전과 동일	국민연금법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(02-500-5512)
	가입기간 계산 기준 개선	○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 -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함.	○ 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. ○ 다만, 향후 연금 수급액 또한 감소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,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함. i) 취득일이 매월 초일인 경우, ii)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iii)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	국민연금법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(02-500-5512)
	출산크레딧 제도 도입	<신설>	○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돌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함. -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,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함(최고한도 50개월) -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	국민연금법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급여팀 (02-500-5531)
	군복무크레딧 제도 도입	<신설>	○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수급기회 확대 및 연금액을 인상함. -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. -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 -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	국민연금법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급여팀 (02-500-5531)

「신·구 대비표」 계속					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	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	○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%를 지급함.	○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,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함. -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액의 60%를 지급하던 것을 50%로 인하하고, 2009년부터 매년 0.5%P씩 낮추어 2028년 도달시 40%로 인하함.	국민연금법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(02-500-5512)
	소액 부당이득금 징수 제외	< 신 설 >	○ 부당이득환수 대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하는 금액보다 징수를 위해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징수제외 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. - 징수제외 대상 금액 : 3천원미만.	국민연금법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(02-500-5512)
	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 설정	○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급여가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서 실제 압류가 가능하였음.	○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. -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압류금지 금액: 120만원	국민연금법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급여팀 (02-500-5531)
	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신고 기한 변경	○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매년 2월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.	○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이 매년 5월말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, 소득총액신고를 매년 2월에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과 동일한 5월로 변경함.	국민연금법 시행령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(02-500-5512)
	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연체자 폐지	○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연체금 부과	○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 기한까지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없으며, 납부를 재신청하여 납부 가능	국민연금법 시행령 ('08.1.1시행)	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(02-500-5512)

■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

- '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%로 높아집니다. 또한,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%의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.
-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■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

- '08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“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”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동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,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하였습니다.
- 동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·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개요>

- 기본원칙
 - ①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 분류
 - ②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,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 병행
 - ③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설정
- 환자분류체계
 - ① 임상적 특성과 자원소모량,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
 - ② 대분류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로 구분하고, 중분류는 자원소모량이 동일한 환자를 ADL에 따라 분류
-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

- ① 간호인력 차등제 : 1~9등급 차등, 5등급(8:1~9:1)을 기준으로 1~4등급은 가산, 6~9등급은 감액적용
 - ※ 1~5등급 중 병상수 대 간호사수 18:1 초과한 경우 6등급, 1~5등급 중 간호사비율 2/3이상 1,000원 추가 가산
- ② 의사인력 차등제 : 1~5등급 차등, 2등급(35:1~45:1)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, 3~5등급은 감액적용
 - ※ 가산인 경우 의사인력 1/2이 내과, 외과, 신경과, 정신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 한함

「신·구 대비표」

번 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	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- 20% ○ 중증질환 - 10% ○ 6세미만, 자연분만 - 면제 ○ 가산식대 - 5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- 50%로 변경 ○ 중증질환 - 50%로 변경 ○ 6세미만, 자연분만 - 50%로 변경 ○ 가산식대 - 50% 유지 	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('08.1.1 시행)	보험연금 정책본부 보험급여팀 (02-2110-6368)
	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을 10%로 조정 ※ 단, 신생아는 본인부담 면제 	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('08.1.1 시행)	보험연금 정책본부 보험급여팀 (02-2110-6368)
	장제비 급여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을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도 폐지 *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	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('08.1.1 시행)	보험연금 정책본부 보험급여팀 (02-2110-6489)
	요양병원 일당 정액제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위별 수가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서비스 요구도별 차등 일당정액수가 - 일부 행위별 수가 병행 ○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- 간호인력: 1~9등급 차등, 입원료 가감 - 의사수: 1~5등급 차등, 입원료 가감 	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('08.1.1 시행)	보험연금 정책본부 보험급여팀 (02-2110-6486)

■ ■ ■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

-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'08년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,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.
 -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,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또한,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 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함으로써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※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신고·등록업소만을 이용하도록 홍보 예정

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결혼중개업체 이용요령〉

-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
 - 결혼중개업의 규율 형태
 - 국내결혼중개업: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신고
 - 국제결혼중개업: 시·도지사에게 등록
 - 결혼중개업자의 의무
 - 결혼중개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의무,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
 - 결혼중개 계약서의 내용: 수수료·회비 등에 관한 사항,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,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
 - 외국 현지법령 준수
 - 허위·과장된 표시·광고의 금지
 - 허위·과장되거나 국가·인종·성별·연령·직업 등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의 금지
 - 결혼중개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제공의 금지
 - 손해배상책임의 보장
 -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예치
-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확인 사항
 - 중개업체 내 신고·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가
 -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·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시되어 있는가

○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설명하는가

「신·구 대비표」					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	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실시	〈신규〉	○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(시·도),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(시·군·구) 도입·시행	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(08.6월중)	인구여성정책팀 (031-440-9368)

장애허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- '08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, 교육,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,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, 모·부성권·성 등, 가족·가정·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. 또한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.

「신·구 대비표」					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	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	〈신규〉	○ 장애는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개념 규정 ○ 차별개념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, 광고에 의한 차별, 직접·간접차별 등으로 한정하고, - 고용, 교육,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,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, 모·부성권, 가족·가정·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차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○ 동 제도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수단을 담고 있으며, 특히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. ※ 벌칙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※ 시정권고(국가인권위원회), 시정명령(법무부)	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(08.4.11 시행)	장애인정책팀 (02-2110-6266)

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

-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노인의 60%(약 301만명)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(A값)의 5%('08년 8.4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“기초노령연금제도”가 '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다만,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,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고,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,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지급받으시게 됩니다.
- '08.7.1일 현재 이미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'08년 4~5월을 전후(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홍보 예정)하여 신청·접수를 하시면 되시고, '08.7.1일 이후에 65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은 65세가 되시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

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□ 기초노령연금은 '08년도에 전체노인의 60%(약 301만명)에게 지급되지만, '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체노인의 70%(약 363만명)에게 지급되게 됩니다.

「신·구 대비표」					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	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체노인의 60%(약 301만명) 대상 국민연금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%('08년 8.4만원)를 매월 지급 ○ '08.1월부터 시행하되, 1월부터는 1937.12.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* 이하인 재(약 192만명),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기준 이하인 재(약 301만명)로 적용 확대 * 노인단독가구 40만원, 노인부부가구 64만원 	기초노령연금법 ('08.1.1시행)	기초노령연금 총괄팀 (02-500-5540)

■ ■ 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

- '08.4.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·시행될 예정입니다. 또한, '08.1.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(심혈관·희귀질환팀)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.
- 현행 제도의 '선지급 후환불'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개선되어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의 질병관리본부 이관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, 질병정보 관리 및 상담, 연구 등 집행전문조직으로써 수행하고,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
〈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개요〉

-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
 -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
 -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('08.4.1부터 시행)
 -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진료비(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)를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
 -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처리
 - ※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("H"코드 신설) 및 칼럼 추가,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,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
 - 보장구 구입비 지원
 - 장애인보장구 제조·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(보호자 포함)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('08.1.1부터 시행)
 -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·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
 - 호흡보조기(또는 산소호흡기) 대여료 지원
 -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(보호자 포함)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('08.1.1부터 시행)
 - 청구된 호흡보조기(또는 산소호흡기)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·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
 - 간병비 지원
 -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계좌로 자동 지급 됨('08.1.1부터 시행)

「신·구 대비표」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비 지급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시·군·구 보건소 ○ 의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자가 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료영수증을 보건소에 청구 - 보건소는 청구된 의료비에 대해 심사 후 지급(약 1개월 소요) ② 보장구구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자가 보장구 구입 후 본인부담금을 직접 보건소에 청구 ③ 호흡보조기(또는 산소호흡기) 대여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자 또는 지급보증기관에서 직접 보건소로 매월 청구 ※ 6개월마다 진단서 제출 ④ 간병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환자가 매월 청구 ○ 사업관리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복지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• 법인 및 단체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비 지급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○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비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 없이 요양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-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진료비(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)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-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 지급(5일 이내)하고 심사 후 정산처리 ② 보장구구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자의 별도 청구절차 없이 보장구 제조·판매자가 공단으로 요양급여 청구시 지원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일괄 입금 ③ 호흡보조기(또는 산소호흡기) 대여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※ 6개월마다 진단서 제출 필요 없이 2년마다 자격확인 단 분기별 임대보증회사의 관리 실태조사 실시 ④ 간병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병비 지원대상자로 최초 선정시 사망시까지 별도의 청구행위 없이 매월 입금 ○ 사업관리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복지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• 각종 시책개발·추진 • 법인 및 단체 관리 	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('08.1.1 시행)	건강정책관 질병정책팀 (031-440-9117)

「신·구 대비표」 계속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비지원 및 대상자 관리 • 희귀난치 전산망 운영 • 지침개발,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홍보 - 질병관리본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희귀난치성질환 정보센터 운영 •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·운영 • 희귀난치성질환 연구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질병관리본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비지원 및 대상자 관리 • 희귀난치 전산망 운영 및 관리 (질병정보, 사업안내, 온라인상담, 통계관리 등 통합운영) • 지침개발,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홍보 •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·운영 • 희귀난치성질환 연구개발 		

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

- '08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됩니다.
 - 응시원서 접수, 시험문제 출제·채점, 응시자격 심사, 합격자 발표와 같은 시험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, 최종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종전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게 됩니다.
 -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달 앞당겨 시행됩니다.
 -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, 필기시험 실시 후 응시자격을 심사하여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.

「신·구 대비표」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	○ 시험관리기관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○ 시험일자: 매년 3월 ○ 원서접수: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병행 ○ 응시자격심사 : 시험일 전 사전심사	○ 시험관리기관: 한국산업인력공단 ○ 시험일자: 매년 2월 ○ 원서접수: 인터넷 접수 ○ 응시자격심사: 시험 실시후 심사 * 응시자격 미달시 불합격 처리	사회복지 사업법시행령 (07.10.31. 시행)	사회정책팀 (02-2110- 6199)

■ ■ 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

- '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.77%에서 0.31%p 증가한 5.08%로,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.9원에서 9.0원 증가한 148.9원으로 전년 대비 6.4% 인상됩니다.
-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료이용 증가가 매년 10% 이상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, 국민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증 환자 위주로 급여구조를 개편해 불합리한 지출요소는 보다 철저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■ ■ ■ 지역가입자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·징수방법 변경

- '08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,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확대됩니다.
- 그에 따라 E-6(예술홍행), E-10(내향선원), H-2(방문취업)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,
- 국내체류 재외국민·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·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%에서 50%로 확대됩니다.
- 한편,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외국민·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·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됩니다.

■ ■ ■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조정

-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 1일에서 6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.
- 보험료 부과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개선합니다.

「신·구 대비표」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	건강보험 보험료 조정	○ '07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.77%,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39.9원	○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.08% ○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48.9원	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 (08.1.1. 시행 예정)	보험정책팀 (02-2110- 6356)
	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·징수방법 변경	○ 신청대상 체류자격: 문화예술(D-1)외 22종 ○ 유학생보험료 경감: 30% ○ 3개월 단위 선납	○ 신청대상 체류자격: 문화예술(D-1)외 22종에 E-6(예술홍행), E-10(내향선원), H-2(방문취업) 추가 ○ 유학생보험료 경감: 50% ○ 매월선납	국민건강보험 법 시행규칙, 장기체류 재 외국민 및 외 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(08.1.1시행)	보험정책팀 (02-2110- 6353)
	소득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시기 조정	○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시기: 12월 1일	○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시기: 6월 1일	국민건강보험 법 시행규칙, 피부양자 인 정기준 (08.1.1시행)	보험정책팀 (02-2110- 6353)